

## 지방계약법 조문별 해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 최 두 선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도 지방계약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난호에서 지방계약법령 외에 개별법령에서 지방계약법령을 보완하는 내용들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하도급관계, 시공능력 공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특정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해당개별법령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호 건설산업기본법에 이어 전기공사업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 2.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전기공사업법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전기공사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등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역시 건설산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주로 전기공사업의 영업범위,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격, 하도급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가. 전기공사 시공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경미한 공사로서 공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꽃음접속기, 소켓, 로우젯,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교환공사
- 벨, 인터폰,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전압 36V이하) 설치 및 2차측공사
-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 내는 공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꽃음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단,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공사)
- 국가·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

### 나. 전기공사의 하도급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일괄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 수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또한 **전기공사 재하도급**은 전기공사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공정에 전기 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하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전기공사의 발주자(재하도급일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발주청 및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자 또는 재하도급자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 다.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시공관리책임자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공사사업자는 반드시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규모에 따라 시공관리 할 수 있는 전기공사 기술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 전기공사기술자의시공관리구분 》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특급(또는고급)전기공사기술자	○ 모든 전기공사
2. 중급전기공사기술자	○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초급전기공사기술자	○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전기공사사업자는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사실을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라. 분리발주의무

전기공사법 제43조제4호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나 다만,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발주가 가능하다.

**예시** 국가기밀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

#### 가.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정보통신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통신설비 공사 : 통신선로설비,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 위성통신설비, 고정무선통신설비
- 방송설비 공사 : 방송국설비, 방송전송선로
- 정보설비 공사 : 정보제어·보안설비, 정보망설비, 정보매체설비, 항공·항만통신설비,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 철도통신·신호설비
- 기타설비 공사 :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

#### 나. 정보통신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

정보통신공사도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는 터널, 댐, 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나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비상재해**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또는 통신구 설비공사로 분리하여 발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다.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정보통신공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의 경우는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하도급은 가능하나, 재재하도급은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각각 얻어야 한다.

#### 4.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영업의 범위가 구분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시설공사를 말하며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기계분야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
전기분야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도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청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발주청은 하도급인을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하게 되며, 감리대상(연면적 1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시설물은 감리결과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 5. 문화재보호법 (문화재공사 )

문화재공사는 보수단청업자와 조경업자로 구분되며 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보수단청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자 또는 토목 공사업 및 건축 공사업 등록자로서 보수단청업자로 등록된 자.
- 조경업자 : 일반조경공사업, 전문조경 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자.

문화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의특성을 감안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문화재 보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6.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관련 시설물 시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적인 환경관련 시설물의 설치업자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자 격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li> <li>②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폐기물 수집·운반업</li> <li>② 폐기물 최종처리업</li> <li>③ 폐기물 종합처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자 (소음·진동규제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 시설업자(설계·시공)</li> <li>○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에 의한 방지 시설업자(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li> <li>○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li> <li>○ 정화조의 설계·시공업</li> </ul>

###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계약 》

조달청 의무의뢰 대상	자체계약 및 전문기관 위탁 가능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입찰공사</li> <li>○ 일괄입찰공사</li> <li>※ 근거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li> <li>○ 조달요구 대상공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 및 사고의 긴급복구공사의 계약</li> <li>- 시설·감독·하자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공사로서 조달청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원가검토 의뢰</li> <li>※ 근거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li> <li>○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중 다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경우</li> <li>- 재해복구사업</li> <li>- 기타 공사의 특수성,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li> </ul> </li> </ul>

조달의무의뢰대상 사업중 100억원 이상 원가 검토는 기본적으로 조달의뢰의 대상이나 시도에 계약심사 부서가 설치되거나 조달의뢰를 하는 경우 긴급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가 자체검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계약심사과가 설치되어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원가검토의 경우에도 조달의뢰하지 않고 자체심사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다.

## 8.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지난호에서도 잠시 언급 하였듯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서 지방계약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토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기술개발제품의 우선 구매제도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다.

우선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20여 품목이상,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대상이 140여개 이상 고시되어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동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 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경쟁입찰 대상이 되는 경우 최저가 입찰대상에서 배제(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경우 1.9억원 미만 물품구입은 최저가 입찰이 원칙임)하고 중소기업 청장이 고시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면서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이른바 중복제한이라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제도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이상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총구매제품의 5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하고 있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5%로 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23%이상, 일본은 45%이상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 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생산 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서 수의계약 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라. 공사용자재 직접(분리)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구매대상의 범위는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 공사이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기타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로서 분리하는 경우 자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NEP, NET,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등 5종)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치단체는 동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기업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요청하면 우선구매 할 수 있다.

#### 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한 수의 계약제도

이외에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2인 이상 추천하면 공공기관에서 추천된 사업자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9.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세출의 원인이 되는 용역계약의 유형은 크게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용역은 다시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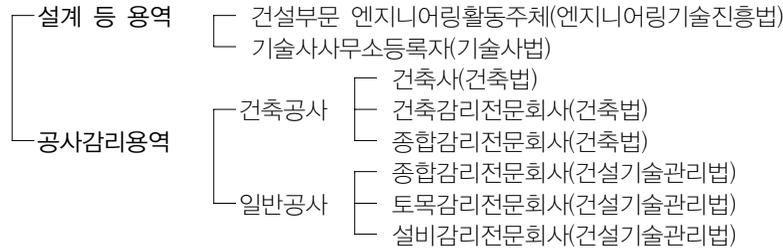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조사, 연구 등 기술과 관련되는 용역을 말한다.

-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용역, 건축용역, 기타 기술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용역의 구분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일반용역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에 의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정책의 개발 및 연구, 수요·공급의 예측
  - 시설분야 용역 : 청소 위생관리, 시설물 경비, 시설물 관리
  - (생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육상·해상 운송 용역
  - 기타 일반 용역( 전시회, 방역, 광고, 무연분묘 개화장)

- ①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
- ②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 ③ 건축설계용역(건축법, 건축사업) : 건축사사무소등록자

여기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제외)등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예정가격이 고시금액(3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 》

기술부문(15)	전 문 분 야(93)
기계부문	1. 기계제작 2. 유체기계 3. 산업기계 4. 공조냉동기계 5. 건설기계 6. 차량 7. 기계공정설계 8. 용접 9. 금형 10. 정밀측정 11. 철도차량
선박부문	1. 선박설계 2. 선박건조 3. 선박기계
항공, 우주부문	1. 항공기계 2. 항공기관
금속부문	1. 철야금 2. 비철야금 3. 금속재료 4. 표면처리 5. 금속가공
전기, 전자부문	1. 발송배전 2. 전기응용 3. 전기철도 4. 공업계측제어 5. 전자응용 6. 전자계산기 7. 철도신호
통신, 정보처리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작응용
화학부문	1. 공업화학 2. 고분자제품 3. 화학장치설비 4. 화학공장설계 5. 세라믹
섬유부문	1. 방사 2. 방적 3. 제포 4. 염색가공 5. 생사 6. 의류
광업자원부문	1. 지하자원개발 2. 탐사 3. 지하자원처리
건설부문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농어업토목 4. 토목품질시험 5. 항만 및 해안 6. 도로 및 공항 7. 철도 8. 교통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건축구조 12. 건축품질시험 13. 도시계획 14. 조경 15. 건설안전 16. 화약류관리 17. 건축기계설비 18. 건축전기설비 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0. 지질 및 지반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농림부문	1. 식품 2. 농화학 3. 축산 4. 종자 5. 산림 6. 임산가공
해양, 수산부문	1. 해양 2. 수산양식 3. 어로 4. 수산제조
산업관리부문	1. 공장관리 2. 품질관리 3. 포장 4. 산업위생관리 5. 기계안전 6. 전기안전 7. 화공안전 8. 소방설비 9. 가스
응용이학부문	1. 제품디자인 2. 원자력발전 3. 핵연료 4. 방사선관리 5. 비파괴검사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건축설계 제외), 설계 감리, 시공, 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 및 안정성 검토, 시설물의 유지·보수 철거·관리 및 운용과 건설공사물자의 구매 및 조달,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공사감리, 시운전, 건설사업감리, 건설기술 타당성 검토, 건설기술정보처리, 건설공사의 견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에서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을 하여야 하며, 설계 등의 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예정용역사업비가 고시금액인 3억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을 하기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라고함)**를 실시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해야 한다.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 관리의 경우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하며, 설계 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은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책임감리용역** 건설공사의 전면 책임감리대상 용역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100m 교량 포함 공사, 공항, 댐, 고속도로,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폐기물처리, 폐수종말처리, 송전·배전시설 등)가 이에 해당되며 부분 책임감리대상 용역은 교량, 터널, 배수물,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쓰레기소각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중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부분 책임감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설계용역이란**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서류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로 정해 놓고 있다.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서 건축사 업무로 규정한 사항
  -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건축주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감리하게 해야 한다.

건축공사의 감리는 감리자가 건축사가 되며, 감리대상은 도시지역 및 준 도시지역내의 건축물,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3층 이상 또는 200㎡이상 건축물, 기타 건축허가 구역 또는 지역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건축물 공사의 상주감리대상은 바닥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 5층 이상으로서 3,000㎡이상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가 해당되며 상주감리인원은 건축분야는 건축사보 1인 이상, 기타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방계약법령이 아닌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외에 또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계약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관한 사항은 지면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한다.

**(법)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중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및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입찰공고·입찰방법·낙찰자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제 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의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법제 9조제1항 단서 및 이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법제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
3. 그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시)제5조(준용)** 법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 ; 입찰의 원칙·입찰공고·입찰방법·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내지 제25조 제39조내지 제41조 및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정부조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대한 WTO 사무국과 정부조달위원회의 결정 등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까지도 동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한 역사를 살펴보면 WTO/GPA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정부조달협정)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으며 처음에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인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개방이 되었으나

그이후 한-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양자간 협정도 이루어져 개방이 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개방되었으며 개방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국가공기업)		
	상 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 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 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GPA 기존양허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1차 수정양허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미양허	1500만
2차 수정양허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한-칠	5만	5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싱	10만	10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미양허	1500만

《 WTO 정부조달 관련 고시금액 》

□ SDR 대 원화환율

구 분	'03~'04 적용	'05~'06 적용	'07~'08 적용
적용환율	1,629.57원/SDR	1,683.53원/SDR	1,479.71원/SDR
평균환율 산정기간	'00.11~'02.10	'02.11~'04.10	'04.11~'06.10

□ 광역자치단체 양허하한금액

조달대상	SDR표시 양허하한 (만SDR)	원화표시 양허하한(억원)			비 고
		종 전 ('05~'06)	현 행 ('05~'06)	증 감	
공 사	1,500	252	222	- 30	
물품 · 용역	20	3.3	3.0	- 0.3	

< 원화 환산방식 >

조달대상	양허하한		고시금액(원)	비 고
	만SDR	원화표시(원)		
공 사	1,500	22,195,650,000	22,200,000,000	억원미만 절상
물품 · 용역	20	295,942,000	300,000,000	천만원미만 절상

## □ 양허기관별 하한금액

양 허 기 관		조달대상	SDR표시 양허하한 (만SDR)	원화표시 양허하한(억원)			비 고
				종 전 (’05~’06)	현 행 (’07~’08)	증 감	
정부조달 협정(GPA)	중 앙 행정기관	공 사	500	84	74	-10	기획재정부고시 (국가계약법)
		물품·용역	13	2.1	1.9	-0.2	
	광 역 자치단체 (울산 제외)	공 사	1,500	252	222	-30	행안부고시 (지방계약법)
		물품·용역	20	3.3	3.0	-0.3	
	정부투자 기관 등	공 사	1,500	252	222	-30	기획재정부고시
		물 품	45	7.5	6.7	-0.8	

그러면 국제입찰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경우 우리나라 조달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까? 우선 국내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인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된다. 현행 공사의 경우 국제입찰대  
 상 금액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제입찰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시행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국제시장에서 개방의 폭이 커지면 우리나라 건설업체 등이 해외에 진출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잇점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도에 한하여 현재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22억 이상, 용역 및 물품  
 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시·도에서 국제입찰대상 계약은  
 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대상을 제외하고는 국제입찰대상이 되면 입찰 공고시 국제입찰을  
 위해서 영문이나 불어 등으로 입찰공고를 4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위 법령에서처럼  
 국제입찰대상이 아니거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품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다음호에 계속). 🌻

